

2019년 금천구마을공동체 자율공모사업 공고

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생활의제를 발굴하고, 실행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'2019년 금천구마을공동체 자율 공모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, 지역사회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9. 7. 1.

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



I 개요

- 사업명 : 마을공동체 자율공모사업
- 사업기간 : 2019년 8월~11월
- 신청자격 :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 3인 이상 마을공동체 (직장, 학교 등이 금천구인 주민모임)
- 접수기간 : 2019년 7월 1일(월) ~ 14일(일) 23시까지
- 예산규모 : 총 3,000,000원(모임별 100~300만원)
- 지원범위 : 활동비, 업무진행비, 사업운영비

※<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>에 따름

사업목적

생활에서 발견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을공동체를 통해 해결함

사업내용 및 예시

- 사업내용 : 마을공동체 형성, 마을공동체 성장, 마을공동체 연결을 통한 마을 문제 해결
- 사업예시 : 노인 상호돌봄 공동체 형성, 어린이 놀이공동체 형성, 아버지 공동체 형성 등

II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

○ 제출서류

- 사업제안서 (사업계획서,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) [붙임1]

○ 접수처 및 접수방법

- 접수일정 : 2019.07.01.(월) ~ 2019.07.14.(일) 23시까지
- 접수방법 :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seoulmaeul.org) 접수
(회원가입 > 지원사업 > 신청 및 접수 > 금천구 마을공동체 자율 공모사업 선택 > 신청하기)

※ 공모사업 신청 후 마을센터로 유선전화 요망

○ 문의 및 사전상담 : 2019.07.01.(월) ~ 12.(금)

- 문 의 :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공모사업 담당 김한/남현숙 (☎ 02-809-8825~7)
- 전화신청 후 전화 및 내방상담 진행

○ 사업절차 - 1차

No	세부내용	추진일정
1	- 공고 및 접수기간	7월 1일(월) ~ 7월 14일(일)
3	- 서류평가, 제안자참여심사	7월 15일(월) / 7월 17일(수)
4	- 실행계획서 작성	7월 19일(금) ~ 7월 24일(수) 예정
5	- 회계교육 및 사업 협약	7월 25일(목) ~ 7월 31일(수) 예정
6	- 보조금 통장개설 및 사업비 교부	8월 1일(목) ~ 8월 2일(금) 예정
7	- 집합 컨설팅	8월 12일(월) 예정
8	-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	8월 ~ 11월
9	- 찾아가는 마을교육	8월 ~ 10월
10	- 중간 컨설팅	9월

11	- 사업 마감 및 정산	11월 31일까지
12	- 정산 및 결과보고 컨설팅	12월 10일까지

※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위해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

[회계교육]

투명한 사업비 운영을 위한 보조금시스템, 홈-텍스, 이-텍스 등 회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선정된 공동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

[집합 컨설팅]

마을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강화를 위한 집합 컨설팅

[찾아가는 마을교육]

일시, 장소, 강사선정은 공동체 자율/내용은 '마을공동체 이해 또는 사례' '사업 운영 시 필요한 주제 및 의제 발굴 워크숍, 갈등해결 워크숍으로 진행

※강사료는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에서 지원

[컨설팅]

공동체 사업별로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사업 시작부터 정산 마무리까지 함께 하며 자원연계 하는 '책임 지원' 방식으로 운영

Ⅲ 심사기준

○ 심사방식

구 분	내 용
서류심사	-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
면접심사	- 서류심사에 선정된 모임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면접심사 진행 -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 정도를 파악
최종심사	- 최종 선정 모임과 사업별 지원 금액 결정

○ 심사기준

심사항목		내 용
사업 타당성	사업의 필요성	. 공공의 과제 해결, 마을공동체 형성·회복에 적합한 사업 인지,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
	사업의 공익성	.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.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
	자발적 주민참여	.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.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
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	사업 현실성	.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.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
	예산 현실성	.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.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. 재정 자립 가능성(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)
	사업 수행역량	. 제안사항에 대한 이해, 경험, 책임성,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
	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	.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

IV 준수사항

○ 준수사항

-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및 회계교육 대표제안자 필수 참여
- 최종 실행계획서에 따라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
- 최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(사업마감 11월 30일,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10일까지)
※수시 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업마감 후 바로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○ 유의사항

-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,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<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>에 따름

※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는 회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

-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
- 법령 및 조례 위반
-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
-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했을 때
- 자부담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,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

※붙임

1. 사업제안서 (제안서,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)
3.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 끝.